

## 프랑스 평생교육에 대한 소고 - 우리 사회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 경 수  
(상명대학교)

### ◆ 국문초록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제어 : 프랑스 평생교육, 고등교육 시스템, 평생학습사회, 평생교육 정책, 대학

“정규교육과 재교육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sup>1)</sup>

## 1. 들어가는 말

2016년 7월 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는 ‘총장 퇴진’을 외치며 대학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의 시위로 시끄러웠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결국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캠퍼스에 투입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언론의 주요 기사들 중 하나였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대생들은 일부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당시 교육부가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이화여대를 선정했기 때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란 ‘선취업 후진학 제도’ 차원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것으로, 고졸 학력의 직장인들이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다. 사업의 취지상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30세 이상의 성인들도 이 대학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화여대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대학 내에 ‘미래 라이프대학’이라는 이름의 평생교육 관련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 사실을 접한 재학생들은 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시위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급기야 대학 본부를 점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등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단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학사 학위를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수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힘든 입시 과정을 거쳐 이른바 명문사학에 입학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과 같은 캠퍼스에서, 또 같은 교실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상황

---

1) “L’enseignement et la formation sont facteurs du progrès social, du développement technique et de la croissance économique.” dans l’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9 juillet 1970, Y. Urieta(2011: 9)에서 재인용.

은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어찌 보면 이 사태는 대학 측과 학내 구성원 사이의 소통 부재에 기인한 학내 분류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사업 신청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의 취지나 목적, 이점 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대학 측의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생교육’이라는 과제를 우리의 제도권 교육 내에서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평생교육을 어떻게 대학이라는 제도권 교육에 포함시켜서 함께 공생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응하듯 많은 대학들이 부설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들이 평생교육의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다<sup>2)</sup>.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기관들이 비교적 잘 유지·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을 제도권 교육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거나 접목시키는 것 또한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러한 시도들이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 갈등의 끝을 이화여대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방식에 있어서 불거지는 충돌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본고의 출발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

2) 최근 들어서는 계약학과라는 명칭으로 대학교육 내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과정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운영 취지나 현황 등 계약학과와 관련된 논의 또한 평생교육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주제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 상황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우리보다 40여년 앞서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프랑스의 평생교육에 대해 검토해봄으로써,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의 공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랑스 교육제도의 원칙과 특징 등 프랑스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틀 안에서 평생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II.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징

한 국가의 역량을 가늠하는 데에 그 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교육제도의 틀과 운영 방식에는 그 사회의 구성 원칙들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마련이고, 이를 통하여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그들만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주는 독특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가 주도의 교육 시스템 운영과 고등교육의 이원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1. 국가의 공공 서비스: 공교육의 확립

프랑스 교육의 특징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른바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의 공교육(éducation publiqu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들 중 하나로 보는 인식이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한

이들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었다(이민경 2008).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길러내는 데에는 교육이 핵심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들의 생각이 서서히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점차 기본 틀을 갖추게 된 프랑스 교육 체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진 프랑스의 교육 편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격변기인 17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제도를 꿈꿨던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프랑스의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오늘날 대학(universit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제국대학(Université impériale)이 1806년에 설립되었다. 제국대학은 초·중등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으나, 당시 급변하는 정치 상황만큼이나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했다. 특히 나폴레옹 시대가 지나고 부르봉(Bourbon) 왕조에 의한 왕정복고(Restauration) 초창기에는 설립 당시 붙여진 ‘impérial’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1822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sup>3)</sup>. 결국 7월 왕정(Monarchie de Juillet)이 한창이던 시기에 대학은 중앙집권적(centralisé) 공교육의 상징이 되었는데, 당시 교육부장관을 지낸 기조(Guizot)가 입안한 1833년 기조 법<sup>4)</sup>에 따라 모든 꼬뮌(commune, 시·읍·면 단위)마다 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프랑스 교육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김중우 2004).

이상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국가 관리 체제 하의 공교육 제도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려는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 간주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의 공교육 시스템은 귀족이나 소수의

3) [https://fr.wikipedia.org/wiki/Universit%C3%A9\\_de\\_France](https://fr.wikipedia.org/wiki/Universit%C3%A9_de_France).

4) 기조 법은 초등교육의 기본 체제, 즉 교육 목표 및 교사의 선발, 교사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도(道)마다 사범학교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의 발효는 프랑스 현대 교육사상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제3공화국(1871-1945) 초기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등 공교육의 원칙들이 확립되었다(김중우 2004).

엘리트들을 위해서만 보장되고 향유되던 교육의 권리가 전 시민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과 별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또한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고등교육의 이원화 부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2. 고등교육의 이원화

프랑스 교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고등교육의 이원화, 즉 일반 시민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대학(université)과 엘리트 교육을 담당하는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의 분리이다. 이처럼 대학과 그랑제콜의 이원체제로 고등교육이 분리된 것을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징으로 꼽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교육은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이원화는 두 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sup>5)</sup>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은 따로 선발하여 그랑제콜에서 엘리트 과정을 밟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교육기관의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교양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개방적인 교육 기관인데 비해 그랑제콜은 전문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비교적 폐쇄적인 기관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 주체 세력들은 중세의 산물인 대학에서는 더

---

5)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나폴레옹에 의해 180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흔히 ‘박’(Bac)이라고 불리는 바칼로레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서,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이처럼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칼로레아는 거의 2세기에 걸쳐 프랑스 국민들의 철학적 사고와 그 표현 능력의 상징이 되어왔는데, 점차 교육이 민주화되면서 90년대 중반까지도 50%에 못 미치던 합격자 수가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초기의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 되기는 했지만, 바칼로레아는 여전히 중등교육을 마쳤다는 졸업장인 동시에 사회 진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다(이경수 2014: 74-75).

이상 혁신적인 변모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결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바로 그랑제꼴이다. 특히 나폴레옹 1세가 국가에 봉사할 근대적 엘리트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그랑제꼴 제도를 확립시킨 이후 그랑제꼴에서의 교육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학생 선발에서부터 차이<sup>6)</sup>를 보이는 일반대학과 그랑제꼴 출신들 간의 ‘차별’이 졸업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랑제꼴 출신자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지위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반대학 출신자들과는 구별되는 특별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그랑제꼴 출신자들이 누리는 이러한 특혜에 대해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은 똑같이 주어진 평등한 기회 속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고등교육의 이원화가 빚어내는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그랑제꼴을 민주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 III. 프랑스의 평생교육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관리 체제 하에서의 공교육 제도와 고등교육의 이원화라는 프랑스 교육의 두 가지 특징은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는 무상교육, 의무교육, 비종교성 교육 등 공교육의 원칙<sup>7)</sup>을 세우고 모든 시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시

6) 그랑제꼴들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그랑제꼴 준비반(classes préparatoires aux grandes écoles)에서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보통 일반대학의 3학년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7) 프랑스 공교육은 무상교육(éducation gratuite)과 의무교육(éducation obligatoire), 비종교성교육(éducation laïque)라는 3대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를 간

민들이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깥로레아라는 높은 장벽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교육 혜택을 모든 연령의 국민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1년 드로르(Delors) 법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을 지칭하는 프랑스어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자<sup>8)</sup>. 프랑스에서는 정규교육은 일반적으로 ‘éducation’(혹은 ‘enseignement’)의 용어로, 이에 대비되는 재교육은 ‘formation continue’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sup>9)</sup>. 후자는 물론 주로 직업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1971년의 드로르 법이 만들어지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formation professionnelle’이 등장하였고, 이후 복지 사회에 걸맞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정규교육과 재교육을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로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0)</sup>. 이 용어상 구분을 도식화해보면 다음 <도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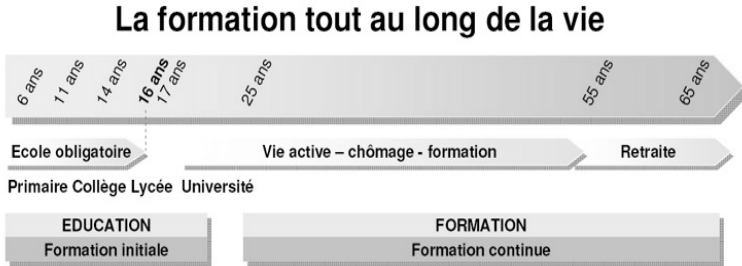
---

략하게 부연 설명하자면, 무상교육은 1933년부터 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은 처음에는 만 6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까지가 대상이었으나 1959년부터 16세로 그 대상이 연장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이면서도 프랑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종교성(laïcité) 원칙은 1964년 헌법에서 종교적 중립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경수 2014).

- 8) 평생교육 용어와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은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www.education.gouv.fr/cid50753/la-formation-continue-des-adultes)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 9) ‘formation continue’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규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formation initiale’이 사용되기도 한다.
- 10)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용어는 ‘formation continue’가 가장 적합한 용어로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용어상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의 의미로 평생교육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표 1〉 프랑스의 평생교육 정의



(출처: <http://www.education.gouv.fr/cid217/la-formation-tout-au-long-de-la-vie.html>)

지금부터 이 평생교육의 역사에서부터 담당 기관 등 프랑스의 평생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1. 반세기의 역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1971년 제정된 드로르 법은 프랑스의 공교육 시스템 내에 평생교육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법 제정의 논리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국민 개개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노동자들이 적응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의 법안 제1조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Aux termes de son article 1e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a « pour objet de permettre l'adaptation des travailleurs au changement des techniques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de favoriser leur promotion sociale par l'accès aux différents niveaux de la culture et de la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et de leur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culturel, économique et social ».

(Y. Urieta 2011 : 11)

또한 이 드로르 법은 프랑스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다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선,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평생교육 기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sup>11)</sup>. 다음으로,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히 정규교육에서 배재되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휴가(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sup>12)</sup>. 이 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등교육 분야에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GRETA<sup>13)</sup>가 탄생하였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CNAM<sup>14)</sup>과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sup>15)</sup>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와 고용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도 초기의 평생교육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롭게 사회 문제로 등장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업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주로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sup>16)</sup>가 책임져야 할 실업자와 학교 밖 청소년

11) La loi de 1971 instaure une obligation de financemen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pour les entreprises de 10 salariés et plus (Y. Urieta 2011:11).

12) Ce congé s'inscrit, en outre, dans la volonté affirmée de remédier à l'inégalité des chances et de favoriser les salariés sans formation initiale suffisante puisqu'en sont exclus « les travailleurs titulaires d'un diplôm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long ou d'un diplôme professionnel depuis moins de trois ans, ainsi que ceux dont l'ancienneté dans l'entreprise est inférieure à deux ans » (Y. Urieta 2011:11).

13) Groupement d'établissements publics locaux d'enseignement의 약자로 (공)교육 기관 지역연합으로 번역되는데 본고에서는 원어 GRETA로 쓰기로 한다.

14)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의 약자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립직업 기술학교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원어 CNAM으로 쓰기로 한다.

15) 공식 명칭은 대학평생교육부(Service de formation continue des universités)이고 최근 들어서는 대학에 따라 노인대학(Université du troisième âge)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16) 직업교육의 양상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1983년 1월의 지방분권 관련법에 따라 학습과 직업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지방 자치단체의 몫으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Y. Urieta(2011)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책임지는 곳은 여전히 기업이지만(41%) 16%의 국가에 이어 지방 자치단체에서 14%를 부담

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4년에 개정된 법안이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 la loi de 2004 élargit les objectif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qui a désormais « pour objet de favoriser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travailleurs, de permettre leur maintien dans l’emploi, de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leurs compétences et l’accès aux différents niveaux de la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de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culturel et à leur promotion sociale ».

(Y. Urieta 2011:11)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평생교육은 직장인들의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한 직업교육인 동시에 정규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실업자들이 직업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그 대상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

## 2.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1971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공교육 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교육 제도와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된 재정적 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을 기점으로 제도권 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한 프랑스의 평생교육이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는지 중등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자.

---

하고 있다.

### 2-1.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GRETA<sup>17)</sup>

GRETA는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프랑스 교육부에서 설립한 것으로 2014년에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공교육기관 지역연합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목표로 프랑스 전국 각지에 설치된 교육기관 연합기구이다<sup>18)</sup>. 지역(région) 마다 적어도 하나의 GRETA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전역에 총 191개의 GRETA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GRETA가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 연합체이므로 중학교(collège)와 일반(général), 직업(technique), 그리고 기술(professionnel) 계열의 고등학교(lycée) 등이 그 연합 대상이다. 지역별로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 공교육 기관들과 해당 지역 교육청과의 협약에 의해 GRET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GRETA에 참여하는 교육기관 수는 4천 7백여 곳에 이른다.

GRETA에서 하는 교육 활동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크게 직장인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인데, Y. Urieta(2011)는 이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어학 프로그램, 직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둘째, 중·고등학교 수준의 직업 관련 학위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셋째,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간을 맞추어 제공한다. 넷째, 프로그램 연수생들이 취득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증명을 해준다.<sup>19)</sup>

17) 2-1.에 기술된 내용은 프랑스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항목에 게시된 내용들 중 GRETA와 관련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cf. [www.education.gouv.fr/cid50753/la-formation-continue-des-adultes](http://www.education.gouv.fr/cid50753/la-formation-continue-des-adultes)). 따라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출처는 동일함을 밝혀둔다.

18) “Un Greta est un groupement d'établissements publics locaux d'enseignement qui mutualisent leurs compétences et leurs moyens pour proposer des formations continues pour adultes.”

19) Les Greta peuvent proposer des formations générale, des formations en langue, des formations de remise à niveau, des formations aux métiers ; préparer l'obtention de diplômes professionnels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baccalauréat professionnel,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 adapter la durée et le contenu des formations en fonction des besoins et des objectifs de chacun : le salarié ou le demandeur d'emploi peut construire son propre parcours et l'échelonner dans le temps ;

GRETA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수준별로, 또 맞춤형으로 이루어짐으로써<sup>20)</sup> 개설 과정과 수강 기간은 이수자들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즉, 전적으로 과정 이수자들에게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물론 이처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현지 기업들과 지방 자치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육생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체에서, 구직자들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GRETA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들은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직업군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크게는 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은행, 보험, 판매, 관광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service) 분야와 전기, 전자, 기술 등의 산업(industrie) 분야, 그리고 목재, 가죽, 응용 예술 등 소수 직종(métiers rares)에 걸쳐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분야로서 대부분의 GRETA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실제 가르쳐지고 있는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와 같은 주요 유럽어들이고,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은 수요에 따라 개설이 된다<sup>21)</sup>. 어쨌든 지역에 따라, 또 일부 직업계열이나 기술계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GRETA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또 참여하기도 한다(Y. Urieta 2011).

## 2-2.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평생교육은 GRETA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과

---

proposer des prestations comme le bilan de compétences, l'accompagnement à la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ou l'aide à la recherche d'une orientation.

20) GRETA의 교수진은 주로 성인교육 분야에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나 관련 직업 분야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1)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F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과정 또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는 달리, 고등교육 과정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CNAM(국립 직업기술학교)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다. Y. Urieta(2011)에 따르면, 두 기관 중에서 대학이 그 중 2/3를, CNAM에서 나머지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에 있는 만큼 여기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22)</sup>.

평생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71년의 드로르 법 제정 훨씬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90년의 시민대학(université populaire, 일종의 개방대학)이 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시민대학은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고, 1968년의 혁명에 이어 같은 해 11월 고등교육과 관련된 에드가 포르(Edgar Faure) 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은 이전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모든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3년 뒤인 1971년 드로르 법으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의해 평생교육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어서 1986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C. Agulhon 2004).

이와 같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정규교육과는 달랐다. 앞서 프랑스 공교육의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교육처럼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 방식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원이 대학에 설립되었다. 현재에도 Université du temps libre(UTL), Université tous âges(UTA), Université pour tous(UPT)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1973년에 툴루즈(Toulouse) 대학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당시에는 제3의 인생을 시작한 노인들이 각자의 노후와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경험해볼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후 1975년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1976년에 렌느(Rennes), 1977년에 오를레앙(Orléans) 등의 도시에 대학 평생교육원 과정이 생겨났고, 1978년 가을에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100여 곳의 평생교육원이 설립되

22) CNAM과 관련해서는 황영희(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었다. 이처럼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 자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소속 교수진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특강(conférence) 형태의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토론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 의학, 역사,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노인들에게만 입학과 등록의 자격이 주어질 만큼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980년대 이후 사회 구조가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그 기능과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발생한 경제 위기와 고용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더 가속화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대학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면서 대학은 조금씩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제공하였다. 게다가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를 담당할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대학을 위시한 고등교육 기관들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 la formation continue tout au long de la vie dans l'enseignement supérieur permet à ceux qui sont entrés tôt dans la vie active d'avoir une chance d'accéder aux cursus, diplômes ou titr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La formation continue tout au long de la vie permet également d'optimiser les temps de formation en prenant en compte les savoirs et savoir-faire de chacun et de répondre plus efficacement aux besoins et aux attentes des individus, des entreprises et de la société<sup>23)</sup>.

23)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1050/la-formation-continue-universitaire.html>

이를 통해 보면,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은 고등교육과 산업체의 요구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직업 세계로 일찍 진출한 직장인들에게 고등교육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러한 틀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현재 파리 3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 과정(formation continue de Paris 3)은 크게 두 가지 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최적의 조건에서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교육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직장인들이나 구직자들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학사(licence)나 석사(maîtrise)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의 측면이다<sup>24)</sup>. 현재 대부분 프랑스 대학의 평생교육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은 고등교육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위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인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한 축이고, 직무능력인증(VAE)<sup>25)</sup>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이 또 다른 한 축이다. 또한 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우선 평생교육원의

24) Les missions de FCP3 s'inscrivent dans le cadre de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qui permet à chacun d'augmenter ses compétences et d'optimiser son parcours professionnel par des périodes de formation. 이와 관련되어 실제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리 3대학 홈페이지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기 바람.  
(<http://www.univ-paris3.fr/fcp3-service-de-la-formation-continue-de-l-universite-s-orbonne-nouvelle-paris-3-47117.kjsp>).

25)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의 약자인 VAE는 맥락상 직무능력인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직무능력인증제는 1992년에 처음으로 직업능력인증제(validation des acquis professionnels)를 출발점으로 2002년에 VAE로 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직무능력인증제는 평생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정규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학위(diplôme)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GRETA나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존재 이유들 중 하나이다.



입학 자격은 직업적인 경험이 있거나 일정한 나이를 충족하도록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직장 내에서의 직위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들은 기업의 재정 지원 하에 과정 이수를 위한 유급 휴가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도 평생교육이 대학 내에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Y. Urieta 2011).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대학 평생교육원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앞서 살펴본 중등교육 과정의 평생교육 담당 기관인 GRETA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큰 차이라고 한다면, GRETA에 비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훨씬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바깥로레아의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인구의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역할을 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통한 교육과 연구 이외에도 평생교육을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직무능력인증 과정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개방된 교육시장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대학의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대학 내에서 위기의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가 평생교육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갈등이 늘 내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가 평생교육이 프랑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교육 시스템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된다는 점 때문이다.

### 3. 프랑스 정부의 딜레마

중등교육 분야의 GRETA와 고등교육 분야의 대학 평생교육원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프랑스 국민 개개인의 능력 개발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1970년에 70%의 노동자들이 학위나 자격이 없었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25%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Y. Urieta 2011). 이는 바꿔 말하면, 평생교육이 기업

의 생산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프랑스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랑스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Y. Urieta(2011)에 따르면, 매년 6만 명의 젊은이들(한 세대의 8%에 해당)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학교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오고, 12만 명은 중등교육 졸업장도 없는 상태로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에도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나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계발하는 데 활용이 되어온 측면이 강했다<sup>26)</sup>.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구직자나 실업자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프랑스에서 직업교육을 위주로 한 평생교육의 풍경은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바뀌게 되었는데 1983년 1월의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그 출발이었다<sup>27)</sup>. 이전에는 국가에서 도맡았던 평생교육 관련 책임과 권한들이 지방 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였다. 프랑스 중앙 정부가 평생교육 관련 활동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3년의 법안에 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활동들을 지방 정부에 이

---

26) Si les taux d'accès à la formation ont augmenté ces dernières année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bénéficie davantage aux cadres qu'aux travailleurs peu qualifiés. D'une manière générale, les entreprises sont plus enclines à former les salariés pour lesquels le retour sur investissement de la formation a des chances d'être le plus élevé, ce qui accroît, en conséquence, la vulnérabilité des autres salariés à l'occasion de fermetures, de restructurations, de transformations d'activités, de changements technologiques(Y. Urieta 2011: 37).

27) C'est tout d'abord la loi de décentralisation du 7 janvier 1983 qui a confié aux régions une compétence de droit commun en matière d'apprentissage e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Y. Urieta 2011: 37).

양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 정부와의 업무 분장을 통해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sup>28)</sup>. 하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역할 분담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국가적 방향 설정에 대한 불만과 혼선은 볼 보듯 뻔한 상황이다.

셋째, 프랑스의 평생교육 제도는 그 근거나 운영 방식에 있어 기존의 공교육 제도와는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가장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국립인 프랑스의 대학들은 중등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확실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대부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대학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주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학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의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고, 결국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이 일정 부분 국가 주도의 공공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복합적이고도 필연적인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난 프랑스의 평생교육이 프랑스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률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

28) La loi quinquennale pour l'emploi du 20 décembre 1993 a cherché à lever ces problèmes en transférant aux régions les actions pour la formation et l'insertion des jeunes en difficulté sortis du système scolaire(Y. Urieta 2011: 37).

## Ⅳ.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행형임에 분명하다. 하물며 앞서 언급한 이화여대 사태에서처럼 대학교육 내에서의 평생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사회 곳곳에서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생교육도 그것의 중심 화두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1981년 개정 헌법에서 평생교육을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인식 변화,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통한 국가의 역할 강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1.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대학의 역할 변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1981년 개정 헌법을 통해 평생교육이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에게도 평생학습사회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용어로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은 은퇴 이후에 제3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노년층에만 국한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정부 예산 혹은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극도로 낮다거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들이 자주 거론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사회가 평생교육에 대해 갖는 무관심과 그로 인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평생교육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원이라는 지엽적이고 주변적인 기능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세영·한승희(2006)는 대학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와 대학의 관계는 매우 ‘일방적인 관계’임과 동시에 ‘추상적 관계’이다, 우선, 그것이 일방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적어도 대학 입장에서 볼 때 평생학습사회는 그리 급박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아직까지는 여유를 두고 천천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그러한 대학의 기여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학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엘리트주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 학습을 제공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일뿐더러 그것은 일종의 ‘봉사’일 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학이 평생학습사회를 위해 기여’할 뿐, 반대로 ‘평생학습사회가 대학을 위해 기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이 관계가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학이 볼 때 평생학습사회는 일종의 이미지이자 슬로건에 불과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학의 존재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학습사회라는 것은 대학과 존재적으로 상관없는 것이며,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세영 · 한승희 2006: 128)

이와 같이 대학이 근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했던 직업교육과 같은 보조적 역할만을 평생교육에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실을 적확하게 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고의 출발이었던 이화여대 사태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대학들은 평생교육에 대해 우리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의 대학사회가 평생교육에 대해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해 보인다. 즉,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천세영 · 한승희(200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평생학습사회로의 학습생태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이며, 만일 ‘평생학습사회’와 ‘대학’의 관계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러한 문제

핵심의 전환과 관련하여 대답되어야 할 것이다.”

(천세영 · 한승희 2006: 128)

결국 평생교육사회에서의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만으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며, 평생교육이 대학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평생학습사회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평생교육이 대학의 핵심 역량들 중 하나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평생교육 이원화 시스템 구축

그렇다면 평생교육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만으로 모든 상황이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대학이 정작 제도적으로 평생교육을 맞아 들일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평생교육의 문제를 제도, 즉 시스템의 문제로 한정하게 되면, 흔히 하는 생각이 이른바 선진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선진 제도를 도입, 운영해왔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제도들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물론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은 아니다. 그 차이는 제도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그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제도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와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 우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어떤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자. 프랑스는 일반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인 그랑제콜의 분리를 통해 고등교육의

이원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만큼 대학 교육과정에 녹아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GRETA를 통하여 중등교육 분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와 중등교육의 평생교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이 고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이화여대 사태와 같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은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GRETA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같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을 과정보로 나누어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의 이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국가의 역할 강화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이 모든 것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는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가속화되는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이화여대 등 전국의 몇몇 대학에 재정지원 형태로 평생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문제는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또 몇 개의 대학에 관련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프랑스마저도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이지 않은가.

그나마 프랑스가 우리보다 나은 환경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국립이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프랑스마저도 평생교육 관련 재정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맡고 있기에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하물며, 국가의 통제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 있는 사립대학들이 즐비한 우리의 대학 환경에서 몇몇 대학들을 대상으로, 일부의 교육 예산으로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면 큰 오산이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사회에 대비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학 사회에 대한 국가의 목소리를 키워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대학들도 서구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육 중심대학, 산학 중심대학 등 대학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자신들 대학의 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대학 입장에서 대학 본연의 모습을 갖춘 후 평생학습사회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중구난방식의 프로그램 난립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조금씩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V. 맺는 말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마땅히 거쳐 가야 할 관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도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현 상황에서의 고등교육은 대학만으로 충분치 않다.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최적의 시스템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로 거듭나기 위해 상당수의 대학들은 향후 ‘대학 같지 않은 대학’, 즉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천세영·한승희 2006).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를 야기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본고의 화두였던 이화여대 사태로 잠시 되돌아가 보자.

우리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과 그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대학의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의 공생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는 프랑스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공교육이 갖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이 실로 엄청나기에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프랑스의 교육이 비교적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평생교육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사회적, 교육적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 정책 방향도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끊임없이 변화가 요구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해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화여대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 ■ 참고문헌

- 고병천, 「평생학습-삶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인가, 교육불평등의 확대인가」, 『평생교육학연구』, Vol. 9, N° 1, 2003.
- 김중우, 「교육의 민주화와 엘리트 양성」, in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도서출판 강, 2004.
- 이경수,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이해』, 집문당, 2012.
- 이민경, 「프랑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논』, 초암네트웍스, 2008.
- 천세영·한승희,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전환」, 『평생교육학연구』, Vol 12, N° 1, 2006.
- 한승희·양은아,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인문학습의 새 지평-인문학 위기론의 재해석」, 『평생교육학연구』, Vol 13, N° 4, 2007.
- 황영희, 「프랑스의 고령화와 노인교육현황 고찰」,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12.
- Gauron André,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0.
- Agulhon Catherine, “La formation continue à l'Université”, dans *Cahiers de la recherche sur l'éducation et les savoirs*, 2004.
- Urieta Yves, “40 an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 bilan et perspectives”, *Les éditions des Journaux Officiels*, 2011.
- [www.éducation.gouv.fr/cid50753/la-formation-continue-des-adultes](http://www.éducation.gouv.fr/cid50753/la-formation-continue-des-adultes)(검색일: 2017.10.30.)
- [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1050/la-formation-continue-universitaire.html](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1050/la-formation-continue-universitaire.html)(검색일: 2017.11.06.)
- [www.univ-paris3.fr/fcp3-service-de-la-formation-continue-de-l-universite-sorbonne-nouvelle-paris-3-47117.kjsp](http://www.univ-paris3.fr/fcp3-service-de-la-formation-continue-de-l-universite-sorbonne-nouvelle-paris-3-47117.kjsp)(검색일: 2017.10.30.)

❖ ABSTRACT

The overview of lifelong education in  
Fr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Lee, Kyeong-Soo

In Korean society, universities represen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ed to a small number of elite groups at the helm of these institutions. However, our society has encouraged a lifelong system of learning, and apparently, the present university system does not represent an ideal scenario.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for appropriate changes. The event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occurred 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ast year.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notion of lifelong education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university in the absence of a consensus among university and college members regarding lifelong learning in our society. As an alternative, we looked at the case of France, which is adopting a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head of us. Despite regulatory challenges and adaptation of the role of public education in lifelong learning, France has laid a solid foundation.

In our case, we are recognizing the need to prepare for lifelong learn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education by clearly recognizing our national responsibility and increasing the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accordingly. Above all, the role and attitude of universities must change, along with the perception of its members.

Key Words : French lifelong education, Higher education system, Lifelong educational policy, Lifelong learning society, University

228 비교문화연구 제49집(2017.12)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

[www.kci.go.kr](http://www.kci.go.kr)